

- O'Connor를 비롯한 다수 대법관은 비록 저작권 기간 연장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도 보호기간은 법관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며, 사후 70년이란 기간도 ‘제한된 기간’이 아니냐고 지적.

-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76년에도 있었는데 이전의 기간연장과 본질적 차이가 있느냐도 부수적 논점.

- 그러나, Breyer를 비롯한 소수 대법관은 어느 저작자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생존중과 사후 50년에서 20년이 더 연장되었다는 것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느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이는 분명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비난.

○ 평가

- 저작권법이 저작자보호가 아닌 대형 미디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이미 유럽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생존중과 사후 70년으로 정착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바 CTEA의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
인터넷 뉴스 명예훼손 재판관할권에 관한 호주와 미국의 상반된 판결

○ 주요 내용

- 인터넷에 실린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판을 언론사가 소재한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는지 또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가 소속한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는 지가 지금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.

- 인터넷 뉴스 매체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의 재판관할권

을 둘러싸고 미국과 호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.

- 최근 호주 법원은 미국에 주소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라도 자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호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음.

-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가 조지프 구트니크가 최근 미국의 금융전문지 다우존스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내용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호주의 빅토리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.

- 구트니크는 다우존스가 비록 미국에서 기사를 작성, 인터넷에 올렸지만 멜버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인터넷으로 이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호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.

- 그동안 다우존스는 본사가 미국 뉴저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호주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음.

-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해 미국 버지니아주의 제4 순회항소법원은 코네티컷주에 소재한 하트포드 쿠란트와 뉴헤이븐 애드버커트 등 2개 언론사를 상대로 버지니아의 한 교도소 소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재판을 버지니아주에서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.

-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5월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 연방법원은 교도소 소장이 낸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을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었음.

- 최근의 미국 법원의 판결은 미국 다우존스 웹사이트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호주 사업가의 명예 훼손 소송을 피해자의 국가인 호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난 주 호주 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것임.

- 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두 신문이 코네티컷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지로 직접 버지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버지니아의 재판 관할권을 부인하였음.

o 분석

- 지금까지는 언론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은 언론사가 위치한 곳의 법

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으나,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.

- 인터넷상에 실린 언론사의 기사를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, 피해자 소속국의 재판관할을 인정한 호주의 판결은 지나치게 자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로 보임.

- 또한 동일한 사례에 관하여 재판관할을 각각 달리 판시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향후 수없이 제기될 수 있는 국제적인 분쟁해결에 대하여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며, 이에 관해 우리 법상의 검토와 정비가 요구됨.

미국, 온라인 판매세 확산

o 주요내용

- 지난 98년 미국 의회는 인터넷 발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,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인터넷 세금을 자체적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터넷 세금부과 금지법안을 제정?통과시켰으나,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 내 전체 소매부문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고 이는 주 및 지방정부의 세수감소와 연결되었음

- 이후 미국 내에서 인터넷상의 상품판매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으며, 지난 2002년 11월 14일 32개 주정부 담당자들이 과세여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해 이안을 통과시켰음

-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인터넷 과세를 내년 11월까지 연기키로 한 미 의회의 2001년 결정은 물론 연방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음

- 주정부의 인터넷 과세 방침은 또 기존 오프라인 소매상점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면서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, 미국 내 140만개 상점들의 연합체인 미 소매연합의 관계자는 “우리의 목적은 온?오프라인이 동일한 원칙 아래 경쟁하는 것” 이라고 밝히고 있음

- 이에 반해 온라인 소매업계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미국정부가 추진해